

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건설도시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12일, 박순범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

(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박순범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중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
도민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
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주거안정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주거안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위임·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남기호)

가. 조례제정 목적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중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여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혼부부, 청년 신혼부부, 영유아, 영유아 가정, 임차인, 주택, 대출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

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.

- 안 제4조는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도내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인구학적 특성, 주거환경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기본 방향, 재원 마련 방안,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, 관련 기관과의 연계·협력체계 구축, 지원사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대출이자 지원, 월세 지원,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사업 및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신혼부부나 영유아 가정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·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,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-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확대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은 경상북

도의 저출생 문제 중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
도민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여 신혼부부나 영유아 가정의 아
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
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입법
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
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 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와
합리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충
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각지대가 없고 실효성 있는 주거안
정 지원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참고 1

시·도별 조례 현황

건설도시국

시·도	조례명	제·개정일자	비고
서울특별시			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 2019. 11. 6. 개정 2024. 2. 14.	조례
대구광역시			
인천광역시			
광주광역시			
대전광역시			
울산광역시			
세종특별자치시			
경기도			
강원특별자치도			
충청북도			
충청남도			
전북특별자치도	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	제정 2009. 12.28. 개정 2023. 12. 8.	조례
전라남도	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	제정 2021. 6. 3.	조례
경상남도			
제주특별자치도			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